

굿네이버스 아동권리 이슈포커스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주목할 만한 아동의 현안에 대해 아동권리 관점의 이해를 제공하는 한편, 아동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한 인식을 공유하고 개선을 위한 노력에 관심을 촉구하고자 발간되었습니다.

재난과 아동(Children and Disasters)

재난 상황 속에서 아동권리 보호

Purpose |

이번 이슈포커스에서는 재난으로 인한 해외아동의 피해에 초점을 두고 재난이라는 참사 자체뿐 아니라 이후 아동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해하고, 아동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지원의 필요와 방향성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Key message | 재난 시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조치가 최우선 되어야

- 아동은 재난의 피해에 특히 취약하므로, 아동의 피해를 줄이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 재난대응을 위한 구호활동은 긴급구호 및 장기적 재건, 재난위기경감의 맥락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아동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국제적 협력을 기반으로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재난이후 인신매매와 학대의 위험에 노출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가정과 지역사회의 보호 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 재난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질병 및 정신적 트라우마 발생률이 높은 아동에 대해 신체적, 정신적 의료지원이 시급히 필요하다.
- 재난으로 인한 아동의 학교이탈과 교육중단을 방지하고 아동의 보호와 회복을 위해 단계적인 교육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 재난복구 및 대비 시 아동을 일반적 보호 및 치유의 수동적 대상이 아닌 참여 및 역량강화의 능동적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주요용어

- * 재난: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한 재해와 인적 재난을 포함한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피해를 주는 것을 말함. 본 이슈포커스는 자연현상으로 인한 해외 재난사건 중심으로 기술함.
- * 아동: 본 이슈포커스에서 아동은 18세까지를 지칭하며, 인용문의 경우 원문의 기술에 따라 아동과 청소년을 혼용 표기함.
- * 아동친화공간(CFS: Child Friendly Space): 안전한 장소나 학교처럼 자유롭고 구조화된 놀이, 레크리에이션, 휴식, 학습활동을 위해 지역사회가 마련한 환경을 의미함(CPWG, 2012).
-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심각한 외상을 보거나 직접 관련되거나 또는 들은 후에 불안 증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함. 이때 심각한 외상이란, 죽음이나 신체적 손상을 초래하는 충격적인 사건을 의미하며 전쟁, 자연 재앙, 사고, 폭력 등임(심리학용어사전, 2014).

Situation | 아동의 피해현황

“매년 1억명 이상의 아동이 재난에 의해 피해를 받는다.”

자연재해로 인해 아동은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2001 세계재난리포트(World Disaster Report)에 따르면 1990년대까지 매년 6650만 명의 아동이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받았으며, 2000년 이후에는 매년 1억7500만의 아동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2011년 UNISDR(유엔국제재해경감전략기구)의 발표에 의하면 매년 1억명 이상의 아동이 재난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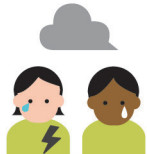
또한, 재난의 50~60%의 피해자는 아동이다(UNICEF, 2011). UNICEF 네팔 지진 리포트(2015b)에 따르면, 최근 2015년 4월 25일 발생한 네팔 지진으로 인해 총 280만명의 피해 중 약 110만명의 아동이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2015년 6월 24일 기준). 네팔 지진으로 인한 총 피해 인구의 약 40%가 아동으로, 사회구성원 중 아동의 피해가 가장 컸다.



매년 **1억명**의 아동이
재난에 의해 영향을 받음
(UNISDR)



재난 피해자의
50~60%는 아동임
(UNICEF)



자연재해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대개 성인 2~25%,
아동의 경우 5~56% 정도 발생
(채정호 외, 2013)



네팔 지진으로 인해
32,145개의 교실이 붕괴되었으며
이에 따라 **999,000명**의
학교 밖 아동이 발생 (OCHA)



아동은 왜 재난에 더 취약할까?

재난으로 인한 아동의 피해가 성인보다 상대적으로 큰 것은 아동의 특성에 따른 취약성으로 설명될 수 있다. 아동은 성인보다 신체적으로 작고 약하며 삶의 경험이 적다. 또한 사회 구조적으로 약자에 위치하고 있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힘들다. 아동은 돌봄과 보호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회구조와 환경에 지배적인 영향을 받게 되며, 재난과 같은 사회혼란의 상황이 아동에게 미치는 직접적인 피해와 그에 따른 간접적 파급력은 클 수밖에 없다. 아동은 재난 시 신체적 상해, 영양부족, 질병 등 직접적인 피해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재난이후의 상황에서 가족을 잃거나,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되거나 적절한 보호 아래 있지 못하게 되어 인신매매, 학대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더욱이 재난으로 입게 된 피해는 경우에 따라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주어 아동기 이후의 삶에도 그 피해가 지속될 수 있다.



Children's rights issue | 아동권리 침해 이슈

인신매매와 학대의 위험에 내몰린 아이들(보호받을 권리)

재난 이후 악화된 경제상황, 아동보호시스템의 불안정 등 사회적 보호요인이 약화되면서 가족과 분리된 아동은 학대, 성착취, 최악의 형태의 노동, 인신매매(Trafficking)와 같은 상황에 더 노출되기 쉽다. 가족의 지지와 보호가 없는 아동은 재난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하여 위험에 더욱 취약하다. 네팔 전 지역에서는 최소한 245명의 아동이 인신매매 과정 혹은 불법 아동 보호소에서 구출되었다(UNICEF, 2015b). 네팔에서는 매년 12,000~15,000명의 아동 인신매매가 이루어질 정도로 아동대상의 매매가 만연한데, 이번 지진 이후 부모를 잃은 아동 혹은 직업을 잃은 부모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매매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져 아동의 안전이 불안정한 상황이다(The Guardian, 2015). 뿐만 아니라 19세미만 네팔아동의 조혼율은 전체결혼의 58%일 정도로 높아 재난이후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아동을 어린나이에 결혼을 하도록 하는 가정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Care, 2015).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유괴나 아동매매 방지를 위해 범국가적인 조치를 모두 취해야한다 (35조).

관련조항: 19조(폭력과 학대로부터 보호), 20조(부모와 분리된 아동 보호), 22조(난민아동 보호), 32조(아동노동으로부터 보호), 34조(성착취로부터 보호), 36조(모든 착취로부터 보호), 아동매매·아동매춘·아동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선택의정서

지속되는 재난의 상처(건강할 권리)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자의 30~50%는 아동이다(WHO, 2008). 재난 이후 비위생적 환경, 오염된 물, 영양 부족으로 인해 면역력이 약한 아동은 쉽게 질병에 걸릴 수 있다. 또한 재난이후 제한된 의료시설은 신생아와 산모의 질병 발생을 야기한다. 네팔은 지진으로 인해 70%의 분만센터가 붕괴되어 18,000명의 신생아와 산모의 건강관리가 더욱 취약한 상황이다(UNICEF, 2015a).

더욱이 재난 경험으로 인한 아동의 정신적 충격은 어른보다 더 심각 할 수 있다. 다수의 연구에 따르면 재난 시 발생한 극심한 위기상황으로 인해 아동은 외상 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가질 수 있다(Norris 외, 2002; Neria 외, 2007). 자연재해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대개 성인 20~25%, 아동의 경우 50~56% 정도 발생한다는 연구결과(채정호 외, 2013)와 같이 아동이 성인보다 재난 이후 정신적 질병발생률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네팔 지진 이후 굿네이버스의 지진피해아동 심리상태 조사결과에서도 아동은 쉽게 불안감, 과민성, 분노, 수면장애 혹은 집중력 장애를 가지게 되고 재난의 기억과 공포감을 반복적으로 회상하면서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재난으로 인해 아동에게 발생한 신체적, 정신적 질병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치료되지 않으면 그 영향은 아동에게 지속되는 정신적 손상으로 남게 될 수 있고 이는 장기적으로 아동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Neria 외, 2007).

유엔아동권리협약

모든 아동은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아동의 생존과 발달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6조).

관련조항: 24조(영양과 보건), 27조(적절한 생활수준), 39조 (몸과 마음의 회복)

무너진 학교, 교육의 터전을 잃은 아이들(교육의 권리)

재난은 전 세계 6,700만 학교 밖 아동 발생의 주요 원인이다(UNICEF, 2009b). 재난 이후 많은 수의 학교들은 훼손되거나 붕괴되고 아동들은 교육의 기회가 박탈된다. 굿네이버스 네팔 긴급구호사업지역인 고르카(Gorkha)의 5개 VDC¹⁾에서는 총 340개의 교실 중 266개 교실이 완전히 붕괴되었다. 네팔 전 지역에서는 32,145개의 교실이 붕괴되었으며 이에 따라 999,000명의 학교 밖 아동이 발생하였다(OCHA, 2015). 또한 2006년 필리핀에서도 4차례의 폭풍으로 7,000개의 학교가 훼손되는 등(UNICEF, 2009a) 재난으로 인한 교육권의 침해는 심각하다.

더욱이 재난이후 가중된 사회자원의 손실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동은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교육보다는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특히 남아 보다 여아들은 학교에 가는 대신 집안일을 돕도록 강요받아 교육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시설과 경제적 활동이 곧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아동의 진학률이 낮아지게 되며 결과적으로 교육권이 침해 받게 된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은 교육 받을 권리가 있으며 아동의 능력에 맞게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28조).

관련조항: 26조(적절한 생활수준) 29조(교육의 목적), 32조(어린이노동)

소외된 아동의 목소리(참여할 권리)

재난 발생 이후 아동은 도움을 받는 수동적인 존재로 여겨진다. 재난의 복구 과정에서 아동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 없이 긴급구호가 이루어진다. 특히 재난 이후 마을을 복원하는 계획에 있어 아동의 참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2010년 아이티 지진이후 구호사업과 복원사업에 대한 수많은 보고서에도 아동권리에 대한 언급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Tores, 2011). 재난 이후 혼란의 상황에서 아동의 역할은 흔히 간과되어 버린다. 이러한 재난대응은 아동의 권리를 고려하지 않은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으며 아동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한다(12조).

관련조항: 3조(아동 최우선원칙), 13조(표현의 자유)

[International Standards] 아동권리 보장의 근거

- 국제사회는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해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채택(1989년)하였으며 한국을 비롯한 195개국 이 비준하였다²⁾.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망라하여 아동의 모든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권리 실현의 책임은 모든 사람에게 있음을 명시하였다. 이러한 아동권리의 보장은 특히 침해되기 쉬운 재난의 상황에서 더욱더 지켜져야 한다.
- **The Sphere Project**는 재난 이후의 원조활동의 원칙과 인도적 활동 시 적용해야 할 핵심기준을 제공한다. 이에 따르면 인도적 지원 활동 시 아동을 위한 특정한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모든 상황의 인도적 지원, 활동 모니터링과 평가에 있어 아동의 견해가 받아들여져야 함을 명기한다.
- 재난의 위험감소를 위해 유엔에서는 2015년 3월 **센다이 재해경감체계(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 2015)**를 발표하였다. 센다이 재해경감체계는 재난 이후 위험감소 및 예방을 위해 아동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가 사회 변화를 이끄는 주체가 되어야 함을 명시한다.
 - 재난 이후 위험감소를 위한 정책, 계획, 목표를 설정할 때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를 동반해야 한다(7항).
 - 재난위험감소 정책과 실천에 있어 청소년의 리더십이 증진되어야 한다(19항).
 - 아동과 청소년은 법률의 제정, 국가의 실행,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변화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또한 아동과 청소년에게 재난위험감소에 대한 공헌의 기회와 사회적 분위기가 이루어져야한다(36항).

1) 우리나라 면에 해당하는 행정단위
2) 2015년 5월 5일 남수단이 195번째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함.

Recommendations | 회복을 넘어 성장으로

재난복구의 상황에서 아동의 권리가 최우선 되어야 한다. 재난의 상황에서 아동은 특히 취약할 수 있으므로 아동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아동은 재난 발생 시 타 사회구성원에 비해 보다 많은 위험에 노출되기에 이를 고려한 피해 현황파악과 위기측정, 그리고 별도의 구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 재난피해 복구를 위한 국제적 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재난으로 인해 침해받은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 보호를 위한 충분한 자원이 지원되어야 한다. 직면한 위기상황에 대한 신속한 긴급구호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후 사회 및 의료기반시설을 복구하고 지역사회의 자립을 돕기 위한 장기적 재건복구사업이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재난으로부터 회복력을 기르기 위한 재난위기경감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번 네팔지진(강도 7.8)이 아이티 지진(강도 7.0)과 비교할 때 지진강도가 더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자 및 피해자 수가 적었던 것(18~36배 차이)은 아이티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민사회 차원의 재난대비가 더 잘 되어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³⁾. 재난 발생 시 아이들 자신이 위험을 극복하고, 주변 사회가 아동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재해에 대비하는 것은 중요한 사회적 투자이다. 아동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국가의 경계를 넘어 현지정부, 국제기구, INGO간의 긴밀한 소통을 기반으로 한 국제적 구호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 재난 이후 아동에게 즉각적인 의료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동기는 신체적, 정신적 발달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피해아동 대상 치료가 즉시 필요하다. 아동이 의료서비스에 소외받지 않도록 긴급구호 물품, 의료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위기의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취약한 신생아와 임산부대상 의료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생존에 필요한 식품, 식수, 안전한 곳을 제공하여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심리적 손상 예방을 위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심리치료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가정과 지역사회의 보호 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아동이 가족과 분리되는 것을 예방하고 분리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적으로 모든 아동이 출생등록이 되도록 하여 아동이 가족과 분리되었을 때 가족을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가족과 분리되었을 경우의 위험성을 알리고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족과 분리된 아동에게는 지역 내 보호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아동이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다.

- 재난 이후도 교육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재난 시 학교(교육)의 복구는 다면적인 이점이 있다. 먼저 교육은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인 배울 권리를 보장한다. 사회적·경제적 측면에서는 인적자원 확보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교육시설(학교)은 재난 시 증대되는 각종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보호의 공간을 제공하여 아동이 인신매매, 학대 등 학교 밖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협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아동의 학교생활은 규칙적인 활동과 친구와의 교제를 통해 재난으로 인한 각종 상실 및 트라우마로부터 치유되고 정상성(normality)을 되찾게 된다. 아동의 보호 및 회복과 지속적인 교육을 위한 단계적인 교육지원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 재난 대비 및 피해 복구 시 아동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아동은 일방적 보호나 치유되어야 하는 수동적 대상으로 여겨지지만 본래 자신의 삶의 주체자이며 가정과 사회에 참여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 아동이 성인과 함께 결정의 주체로서 지역발전과정의 참여자로 여겨졌을 때 위기를 능동적으로 극복해 나아 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 수 있다. 참여를 통해 아동은 스스로의 통제력, 어려운 상황에 대한 대응력, 생활기술을 배울 수 있다(CPWG, 2012). 효과적인 재난복구의 방안으로서 아동을 능동적 주체자로서 인식하고 의견이 존중되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3) 참고: Paul S Auerbach (2015.06.05.). Preparedness explains some differences between Haiti and Nepal's response to earthquake. The BMJ, BMJ Publishing Group Ltd. <http://www.bmj.com/content/350/bmj.h3059>

Case Story | 지진 이후 네팔의 아이들

아동을 위한 심리사회적 지원

굿네이버스는 네팔 지진 이후 아동의 교육권, 보호권을 보장하여 재난 이후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학교재건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네팔 재난복구사업은 아동친화공간(Child Friendly Space) 마련,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치료프로그램 실시, 임시교육센터(Temporary Learning Centre) 운영의 3단계로 진행된다.



- 지진발생 이후 가장 먼저, 안전하지 않은 외부환경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아동친화공간을 구축한다. 이곳에서 아동은 선생님, 학부모,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심리상담, 놀이, 미술, 음악, 체육, 학습 활동 등을 진행하여 신체적·정서적 안전, 사회적 인지 발달, 건강과 영양의 상태를 지원받는다.
- 아동친화공간에서 아동이 정착된 이후, 아동이 좀 더 전문적인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치료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아동은 지진 당시 느낀 감정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활동을 함으로써 불안감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성장과정에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등 부정적인 증상을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PTSD 치료프로그램의 현지교사를 양성하여 굿네이버스 긴급구호팀이 떠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놀이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현재까지 15,000명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PTSD 워크북을 활용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으며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이후 아이들이 정서적 안정을 되찾게 되면 다시 수업을 진행 할 수 있도록 임시교육센터가 설치된다⁴⁾. 현재(6월 27일 기준)까지 177 개의 임시교육센터가 설치되었으며 교육센터 재건을 통해 중단된 교육활동을 재기하고 양질의 교육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지진 이후 아동의 회복과 교육 재개를 위한 아동친화공간, PTSD 치료프로그램, 임시교육센터가 순차적으로 운영되는 동시에 무너진 학교건물을 구축하는 사업이 진행된다. 장기재건사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소외되기 쉬운 아동과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마을 운영회를 조직, 지역공동체가 함께 학교건설 사업을 계획 및 추진하고 이를 통해 아동과 가족, 지역사회의 자생적 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동 심리사회적 지원 과정



4) 기존에 설립된 아동친화공간이 활용되기도 함.

참고문헌 |

채정호, 강석훈, 김대호, 박주언, 배경열, 이병철, 허휴정 (2013). 재난상황 PTSD 대응 매뉴얼 개발 연구, 광주광역시.

심리학용어사전 (2014.04), 한국심리학회.

Blanc J., Bui E., Mouchenik Y., Derivois S., Birmes P. (2015). Prevalance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nd depression in two groups of children one year after the January 2010 earthquake in Haiti,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Feb.2015*.

Care (2015.05.05). Nepal Gender and Protection in Brief. Cooperative for Assistance and Relief Everywhere.
<http://reliefweb.int/report/nepal/care-nepal-gender-brief-and-gender-and-protection-overview>

Child Protection Working Group (2012). The Minimum Standards For Child Protection in Humanitarian Action.

IFRC (2001). World Disasters Report 2001. International Federation of the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Neria Y. Nandi A. Galea S. (2007).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following disasters: a systematic review. *Psychological Medicine*. 1 – 14. Cambridge University Press.

Norris FH, Friedman MJ, Watson PJ, Byrne CM, Diaz E, Kaniasty K. (2002). 60,000 disaster victims speak: Part I. An empirical review of the empirical literature, 1981–2001. *Psychiatry* 65, 207–239.

Save the Children (2007). Legacy of Disaster. Save the Children; London.
http://www.savethechildren.org.uk/sites/default/files/docs/legacy-of-disasters_1.pdf

Sphere Project (2011). Sphere Handbook: Humanitarian Charter and Minimum Standards in Disaster Response.

Jason, B. (2015.05.05). Nepal quake survivors face threat from human traffickers supplying sex trade. *The Guardian*.
<http://www.theguardian.com/world/2015/may/05/nepal-quake-survivors-face-threat-from-human-traffickers-supplying-sex-trade>

Tores, J. (2011), Mainstreaming Children's Rights in Post-disaster settings. Georgia state law university.

UNICEF (2009a). Social Consequences of Climate Change Child Rights and Participation. UNICEF New York.

UNICEF (2009b). Towards A Learning Culture of Safety and Resilience Technical Guidance for Integrating Disaster Risk Reduction in the School Curriculum. UNICEF GENEVA.

UNICEF (2011). UNICEF and Disaster Risk Reduction. UNICEF.
http://www.unicef.org.uk/Documents/Campaigns-documents/DRR_final.pdf

UNICEF (2013). UNICEF and Child-Centred Disaster Risk Reduction. UNICEF.
<http://www.unicefinemergencies.com/downloads/eresource/docs/DRR/Child-centred%20DRR.pdf>

UNICEF (2015.05.15.a). Nepal Earthquakes: 12 babies born every hour without basic healthcare in worst hit areas – *UNICEF Press Centre*.
http://www.unicef.org/media/media_81896.html

UNICEF (2015b). Nepal Humanitarian Situation Report 16. 24 June 2015.

UNISDR (2011.10.13.). UNISDR says the young are the largest group affected by disasters. *UNISDR News Archive*.
<http://www.unisdr.org/archive/22742>

OCHA (2015). Nepal Education Cluster Dashboard: 29 May 2015. Nepal Earthquake: Education Cluster.

Piyasil V., Ketuman MD P., Plubrukarn MD R., Jotipanut BSc V., Tanprasert BSc S., Aowjinda BSc S., Thaeromanophap BSc S. (2007).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in Children after Tsunami Disaster in Thailand: 2 Years Follow-up". *J Med Assoc Thai*, Vol. 90 No. 11.

WHO (2008). Manual for the Health Care of Children in Humanitarian Emergencies. World Health Organization Geneva.